

하였기 때문에 판단되며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납세자간의 과세 불형평 발생하였는 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으며 개별공시지가 적용 비율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보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2001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첫째, 납세자의 신고수준 및 세부담을 고려하였는 바, '97년에 신고납부 기준을 30.5% 수준에서 '98년에는 50%~100%, '99년에는 70%~100%, 2000년에는 80%~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취득세·등록세 납세자의 76.2%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90%이상 수준으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별다른 납세마찰이 없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납세자의 신고수준과 과세형평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9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었고 내년도 경제전망도 외형적으로는 하반기에 상향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2001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의 결정범위는 90%~100%하여 시도지시로 하여금 이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한 것이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적용비율	30.5%	50~ 100%	70~ 100%	80~ 100%	90~ 100%	100%
인상조정 폭(최저)	-	20%P	20%P	10%P	10%P	10%P

그리고 2002년도 토지분 취득세·등록세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은 이와 같은 현실화 추세에 맞추고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